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9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『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』 제5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함 (안 제8조)
-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함 (안 제8조)
- 기존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3.3.8.~2016.3.7.로 만료가 되는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 120-1), 전화 : 02-3396-5372, FAX : 02-3396-8734, E-mail : freshkks@junggu.seoul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(☎02-3396-5372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5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두 차례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탁운영)</p> <p>⑤ 위탁 운영기간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」 제5조에 따라 <u>3년</u>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<u>두 차례</u>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위탁운영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5</u> <u>년</u> ----- ----- ----- <u>한 차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